

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

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4년도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활성화지원사업 『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(부산울산)』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8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울산광역시장, 부산광역시장,
울산테크노파크 원장, 부산테크노파크 원장

1. 지원개요

- (사업목적) 부산·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위치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
- (지원규모) 총 약 1.2억원
 - 지원금 : 최대 20백만원/6개사, 기업부담금 : 지원금의 10%이상
- (지원기간) 2024. 9. ~ 2024. 12. (4개월)

2. 지원대상(신청기업)

- (지원대상) 부산·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위치하며,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·중견기업에 한함 (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 제출 必)

3. 세부지원내용

○(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)

지원프로그램*	지원내용	지원기업수	지원금액
시제품제작	-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	6개사 (부산3, 울산3)	기업당 최대 20백만원**
시험·인증획득	- 시험·인증획득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		

* 지원프로그램 중 기업별 1~2개 프로그램 선택하여 지원 가능

** 기업부담금은 10%이상 필수, 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부담이 원칙임

4. 신청방법

○(신청방법) 지역별 담당자 온라인(E-mail) 접수

5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	비고
필수	1. 사업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	붙임1
	2. 사업자등록증	
	3.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	
	4.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활용 동의서	붙임2
	5.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	붙임3
	6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붙임4
	7. 국세·지방세 납세 증명서	
해당시	8. 기타(인증서, 특허 등) 연구역량 증빙 서류	

6. 평가방법 및 기준

○(평가방법) 사전검토* → 실태조사(필요시)** → 선정평가*** 순으로 진행

* 사전검토 : 중복지원, 사업참여제한, 사전제외대상 여부 등 형식 요건 검토

** 신청기업의 기업현황 및 상태, 역량 등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

***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,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

○(평가항목)

평가지표	평가내용	배점
지원 필요성	· 사업의 필요성, 사업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, 수요기업의 의지 등	20점
기업역량	· 기업의 기술경영 능력, 지식재산권 보유현황, 개발인력의 전문성, 사업추진 역량 등	15점
목표달성 가능성	· 수행사업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, 기술의 중요성 ·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타당성 및 소요 사업비 도출 근거의 합리성	30점
사업화 가능성	·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 가능성 · 시제품 제작을 통한 성과창출 및 발전 가능성	30점
파급효과	· 사업성과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· 매출, 수출, 고용 등 기대효과	15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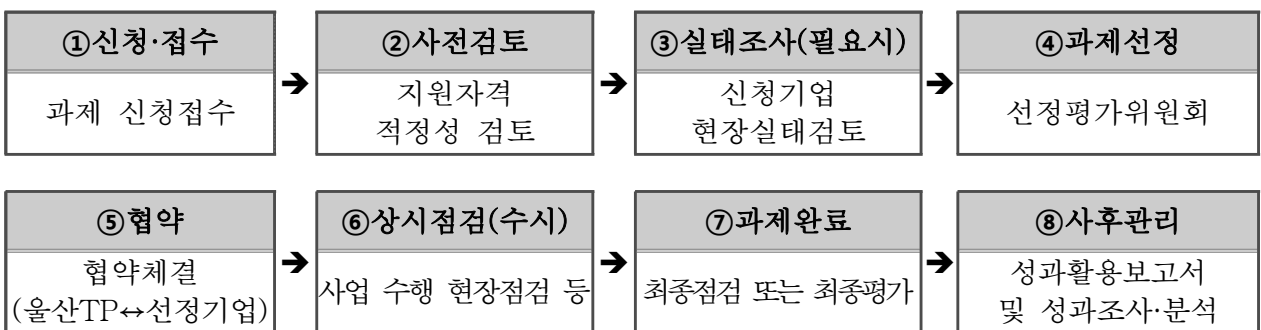
- **(선정기준)**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하며, 지원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고득점순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함.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7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하여야 함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결과 통보 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,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, 중단할 수 있으며, 지원금 지급 후에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, 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신청기업이 부담하여야 함
- 기업책임자 및 담당자의 E-mail을 통해 평가일정 등 진행일정이 안내되므로, 신청서 및 계획서상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
 - *연락처 오기제로 인한 안내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붙임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시 온·오프라인을 통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8. 추진일정

- **(공고 및 접수기간)** 2024년 8월 14일(수) ~ 8월 27일(화), 2주간
- **(지원절차)**



9. 사전 지원 제외 대상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현재 유사 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자(기업)
-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정보시스템 사전조회에서 제기된 문제기업의 경우
- 기타 서류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에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기업

10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, 동법시행령,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수 있음
- (선정제외 기준)
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과 동법시행령 제13조의3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, 방법 및 절차)에 해당하는 경우
 - 「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
- (보조금 교부취소, 제재 및 환수 조건)
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및 「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2조(보조금 교부조건)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
음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)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(간접)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

11. 관련 법령

- 본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.
 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 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 -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
 -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
 -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
 -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
 -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

12. 접수처 및 문의처

구분	기관명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울산	(재)울산 테크노파크	조치욱 선임연구원	052-219-0967	toyoub@utp.or.kr
부산	(재)부산 테크노파크	김진환 책임연구원	051-974-9169	jinhwan.kim.btp.or.kr